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대상 비위가 기존 성희롱·성폭력 비위에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24. 3. 19.), 동 법에서 정의한 비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

1)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구체화

2)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안내

나. 수사 중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 방법 정비(안 제16조의3 및 별지 제6호서식 신설)

-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 서식 신설

다. 기타 미비사항 개선(안 제4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 ‘진술권 포기서’를 ‘출석 진술 포기서’로 명칭 개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30. ~ 7.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진술권”을 “출석 진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피해자”를 “제5항에 따른 피해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따라 요청을 받은 징계처분등의”를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로,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징계처분결과 통보서”를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법 제6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공기업
 -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출자·출연기관
 - 5)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⑤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거나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등 안내가 곤란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의3제2항 중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제1호 중 “진술권”을 각각 “출석 진술”로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사실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직급)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의사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출석 진술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4.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을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 관인

귀하

자 르 는 선

출석 진술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사위원회 귀중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인적 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대상 사건	통보기관	수사 중인 사실을 통보한 수사기관명 기재	
	통보일자		
	사건번호		

위 사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의3에 따라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 통보 시까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및 그 밖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임 용 권 자 직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u>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u> ④ ~ ⑥ (생략) ⑦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u>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u>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관할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생략)	제4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출석 진술</u>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u>위원회</u> <u>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u> --- ---. ----- -----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징계처분등) ① ~ ③ (생략) ④ <u>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u>	제10조(징계처분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라 한다)에게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

<신 설>

⑤ 피해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 전까지 구두, 전

른 출자·출연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출자·출연기관

5)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⑤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거나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등 안내가 곤란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⑥ 제5항에 따른 피해자-----

화,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⑦ 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의3(징계절차의 중지 등)

① (생 략)

② 임용권자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⑦ -----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

----- 별지 제4호의2서식-----

⑧ 제7항-----

제16조의3(징계절차의 중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결정해야 -----

---.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7